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F, ACF-RA, BLB, COA, COA-RA, COA-RB, COB-RA, DJA-RA, IOE-RB, IOI-RA, JEE-RA, JGA-RC, KBA, KBA-RA
 책임 사무소: Office of Security and Compliance;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Office of Special Education

학생의 신고 가능한 범죄에의 대응 Responding to Reportable Offenses by Students

I. 목적

"신고 가능한 범죄 행위"에 관한 Maryland 법을 정의 및 시행하고, 학생이 커뮤니티 기반 기소에 직면했을 때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및 지역 학교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II. 정의

- A. *체포(Arrest)*란 사람을 법적으로 구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 B. *처분(Disposition)*이란 형사절차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 C. *MCPS 소유지(property)*란 MCPS 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부지를 포함하여, MCPS 버스, 기타 MCPS 차량, MCPS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해당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MCPS 학교나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 D. *정규 학교 프로그램(Regular School Program)*이란 학생이 신고 대상 위반 당시 MCPS 를 통해 등록한 과목, 수업,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E. *신고 가능한 범죄(Reportable offense)*란 MCPS 소유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로, Code of Maryland 규정(COMAR) 13A.08.01.17.A.(8)(c)에 정의된 특정 폭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력 범죄에는 방화, 폭행, 강도, 범죄 조직 활동; 통제된 위험 물질 및 통제되지 않은 물질과 관련된 범죄; 파괴 장치 및 무기와 관련된 범죄; 그리고 통제된 위험 물질을 제조, 전달 또는 배포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II. 이슈

신고 대상 범죄로 인한 체포는 위에 정의된 MCPS 구역 밖에서 특정 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범죄를 정의하는 것은 혐의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하는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또는 가능한 한 빨리 학교 교육감/대리인 및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Maryland 법에 따르면 신고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통지가 정학, 퇴학 또는 학생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 변경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IV. 정보 통지 및 기밀

A. 체포 정보 통지 또는 확인

1. 보안 및 규정 준수 책임자(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신고 가능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받고 기본 체포 정보(예: 학생 이름, 사건 날짜 및 혐의)를 신속하게 다음과 같이 전달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감을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 a.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MCPS 학교의 학교장과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OSSI) 내 담당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 담당 책임자를 포함한 적절한 사무실, 또는
 - b. 학생이 등록했거나 전학했을 수 있는 다른 학교 시스템의 교육감
 - c. 체포된 학생이 MCPS 에 의해 비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신원이 확인된 장애 학생인 경우, 보안 및 규정 준수 책임자(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는 체포 정보를 비공립학교의 교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이 보안 및 규정 준수 책임자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 신고 가능한 범죄로 인해 학생이 체포되었다는 정보를 받은 경우, 해당 OSSI 책임자/지정인은 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 와 협의하여 정보를 확인합니다.

B. 체포정보의 비밀유지

1. Maryland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 교육감/대리인이 입수한 신고 대상 범죄 정보는 기밀 정보에 해당합니다. (즉,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a. 학생이 등록했거나 전학한 다른 학교 시스템의 교육감, 또는
 - b.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리 지시된 경우
 - c. COMAR 13A.08.01.17.F 에 명시되거나 제공 정당한 사유에 따른 소년 법원 또는 기타 법원의 명령을 제외하고, 신고 가능한 범죄 정보는 기밀이며 소환장에 의해 재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보는 –
 - a. 본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MCPS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한 학교 교직원에게만 전송됩니다.
 - b. 해당 정보는 학생의 영구 교육 기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 c. 해당 정보는 다음 중 첫 번째 상황이 발생하면 파기해야 합니다.
 - i. 학생의 졸업
 - ii. 학생이 영구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
 - iii. 학생이 22 세가 된 경우
 - iv. 신고 가능한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기각된 경우
 - v. 학생이 신고된 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vi. 학생은 신고 가능한 범죄가 아닌 더 낮은 범죄로 탄원하는 경우

4. OSSI의 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는 이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밀 정보를 받을 적절한 추가 MCPS 교직원을 식별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합니다.
5. 학교장과 OSSI의 해당 책임자는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지명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V.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

MCPS가 MCPS 학생으로부터 신고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통지/확인을 받은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계획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는 담당 부서는 수업일 10일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A. 진상조사

체포 통지/확인 즉시,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1. 학교장은 학생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또는 504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a.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장애 학생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경우, MCPS 규정 JGA-RC, *장애 학생의 정학 및 퇴학(Suspension and Expulsion of a Student with Disabilities)*, IV.C. 또는 V.C.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명시(manifestation meeting) 또는 인과 관계 규명(causation) 회의가 열리며, 신고 가능한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확인 후 가능한 한 빨리 또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b.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명시 또는 인과관계 규명을 논의하기 위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2. 학교장은 적절한 교직원과 협의하여 학교와 다른 학생 및 교직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학생의 존재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a. 학교장은 OSSI 디렉터 및 OSSI의 적절한 담당자, chief of Security and Compliance/지명인, Division of Pupil Personnel and

Attendance Services(DPPAS)와 협의하여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b. MCPS 는 강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 범죄로 체포된 학생이 신고 범죄의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학교 버스를 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학생이 강간이나 성적 공격으로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학교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MCPS 규정 COA-RB, *MCPS 소유지에 등록된 성범죄자(Registered Sexual Offenders on MCPS Property)*는 강간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비행 판결을 받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메릴랜드 성범죄자 등록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B.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계획

1. 학교장이 학생이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즉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a.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다루고,
 - b.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학교 환경을 유지합니다.
2. 학교장은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계획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3.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교장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와의 회의에 학생의 변호사를 초대하여 계획을 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변호사를 동반하는 경우, 교장은 법률 고문실에 연락하여 참석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C. 즉각적인 피해 위협 고려

1. Maryland 법에 따라 "임박한 위험(threat of imminent harm)"은 "안전 위험(safety risk)"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나타내며, 위에 정의한 바와

같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즉각적인 위협을 하지 않는 한, 학생을 정규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이 신고 대상 위반 당시 등록되어 있던 과목, 수업, 관련 서비스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학생이 정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예입니다만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 a. 대면 수업에서 가상/비대면 수업으로 변경, 또는
 - b. 대체 프로그램으로의 행정 배정
3. 다음은 신고 대상 위반 당시 학생이 등록한 과목, 수업 및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는 계획의 예입니다만, 전체 목록은 아니며 학생은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목, 수업, 관련 서비스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경된 일정으로 동일한 학교에 계속 등록하거나
 - b.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과목, 수업, 관련 서비스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에 따라 다른 종합 학교로 배정됩니다.
4. 위의 V.A.2.a 항에 명시된 협의 후, 학교 교장은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학생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장은 학교 교육감의 결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OSSI chief 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학교 교육감의 피지명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감에게 보내는 요청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신고 대상 위반 행위와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 간의 연관성 확인
 - b. 위에 정의된 대로 학생이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임박한 위협에 관한 문서
 - c. 권장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 계획

- d. 학교장이 학생의 IEP 또는 504 계획 여부를 결정한지 확인. 교육감에게 추천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명시 또는 인과관계 규명 회의 결정이 요청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명시 또는 인과관계 규명 문서에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학생의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e.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학생의 변호사는 계획개발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하며 계획 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합니다.
3. 학교 교육감/대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 a. 학생, 학생의 부모/후견인/보호자, 그리고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학생의 변호사와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 b.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학생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회의 후 학교 교육감/대리인이 학생이 학생의 정규 학교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보호자는 서면 결정 및 항소 권리 통지를 받은 후 달력일로 15 일 이내에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제외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VI. 이의 제기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COMAR 13A.08.01.17.D.(7)-(12)을 따라야 합니다.

- A. 교육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학교 교육감의 결정을 유예시키지 않습니다. 학생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교육감이 결정한 계획에 명시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 B. 학부모/후견인/보호자가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Maryland 법에 따라 청문회는 교육위원회가 출석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도 참석하지 않는 곳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VII. 검토 요건

주 검사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수업일 기준으로 최소 45 일마다 또는 주 검사로부터 신고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통지가 있는 즉시 다음 사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A. 안전 계획,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의 상태를 검토하고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 B. 검토에는 학부모/후견인/보호자의 의견과 함께 위의 V.A-B 섹션에 지정된 개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학생의 변호사를 계획 검토를 논의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보호자와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 1. 학생과 학부모/후견인/보호자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2.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보호자가 검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후견인/보호자는 위 섹션 VI에 명시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 C. 신고 대상 범죄의 처분이 비행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이거나 형사 고발 또는 비행 청원이 아직 계류 중인 경우, 학교 교육감/대리인은 이 규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다른 학교 시스템의 교육감 또는 학생이 등록했거나 전학한 주의 다른 비공립 학교에 기밀 파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감/대리인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관련 서비스를 기밀 전송 정보에 포함해야 합니다.

VIII. 보고 요건

매년 MCPS 는 MCPS 가 정보를 받은 각 신고 대상 범죄에 대해 COMAR 13A.08.01.17.J 에 명시된 정보를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에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3 and 7-305; ANN CODE MD, Criminal Procedure Article, §§11-704, 11-704.1, 11-713, 11-721, and 11-722;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8.01.17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24 년 11 월 21 일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